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소비자기본법(이하 “법”) 개정(법률 제20301호, 2024.2.13. 공포)으로 소비자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가 법에 신설됨에 따라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소비자 분쟁조정 회의의 효율성 및 신속성 제고를 위하여 온라인 방식의 분쟁조정 회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광역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운영지침」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시행령상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광역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운영지침」 위임조항 마련(안 제7조)

- 1) 「광역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운영지침」(공정위 예규 제290호, 2018.1.2. 시행)은 소비생활센터의 체계적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 법령에 직접적 위임규정이 없어 법적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2)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전담기구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위임규정을 마련함
- 3) 「광역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운영지침」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자체 소비생활센터의 보다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온라인 분쟁조정회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45조)

- 1) 소비자 분쟁조정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재 오프라인 기반의 분쟁조정 시스템에서는 신속한 사건 처리에 한계가 있어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 조정위원 등이 비대면·온라인으로 회의에 출석하는 방식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규정함
- 3) 회의 참석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회의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소비자정책 실태조사의 절차, 방법 등 마련(안 제67조의2)

- 1) 최근 「소비자기본법」(법률 제20301호, 2024. 2. 13. 공포, 2024. 8. 14. 시행)이 개정되어(제81조의2 신설), 소비자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및 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 요청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법률에서는 이를 위한 세부 방식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
- 2) 실태조사의 조사대상 범위, 조사계획 통지 의무, 조사 수탁기관 등을 규정함
- 3)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구체적 내용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실효성 있는 소비자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없 음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전담기구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63조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이하 ‘위원등’이라 한다)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신·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등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8장에 제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용역 거래에 관한 사항
2. 소비자피해에 관한 사항
3. 표시·광고·가격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소비실태와 관련된 사항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목적, 조사기간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한국소비자원

2. 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부 칙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설치) (생략) <u><신 설></u>	제7조(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설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②전담기구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u>
제45조(조정위원회의 회의) ①·② (생략) <u><신 설></u>	제45조(조정위원회의 회의) ①·② (현행과 같음) <u>③법 제63조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이하 ‘위원등’이라 한다)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신·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등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u> <u>제67조의2(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물품·용역 거래에 관한 사항</u>
<u><신 설></u>	

2. 소비자피해에 관한 사항

3. 표시·광고·가격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소비실태와 관련된 사항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목적, 조사기간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한국소비자원

2. 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 의안 소관 부서명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	
연 락 처	(044) 200 - 4407